

파주시 실과장회 회칙

제 1 조 (명 칭) 본회는 실과장회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 적) 본회는 파주시청 부서장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구 성) 본회의 회원은 파주시청 사무관으로 구성한다.

제 4 조 (가입 및 탈퇴)

- ① 회원가입은 본청 및 시의회와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무관 임용시 자동 가입된다.
- ② 탈퇴는 타기관으로 진출하거나 공무원직을 면함과 동시에 자동 탈퇴된다.

제 5 조 (임 원)

- ① 본회 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총무 1명으로 한다.
-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 6 조 (임원의 할일)

-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총무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7 조 (기 구)

- ① 본회는 총회, 운영위원회, 상무집행위원회를 둔다.

제 8 조 (총 회)

- ①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2월, 6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.
- ②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임원의 선출
 -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회계결산의 추인
 - 회칙의 제정과 변경, 본회의 해산
 -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기로 결의한 사항
- ③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총회를 개최키로 결의할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 (운영위원회)

- ①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실국소별 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.
 - 예산 및 회계결산
 - 총회의 소집요구
 - 총회 소관사항외에 특별히 상무집행위원회가 의결을 요구한 사항

제10조 (상무집행위원회)

-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로 구성하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.
- ② 상무집행위원회는 본회 운영전반에 걸친 실무집행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.
 - 예산 및 회계결산 보고서 작성
 - 회비의 수납과 지출
 -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
 - 회칙의 제정, 변경안 작성과 회칙의 해석
 - 기타 본회 운영전반에 걸친 경미한 사항의 결정
 - 특별히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결의로서 위임한 사항

제11조 (의 결)

- ① 임원의 선출은 2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직접, 비밀,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.
- ② 본회 각종기구의 의결은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③ 단, 본회의 해산은 회원 2/3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.

제12조 (소 집)

- ① 회장은 각종기구의 소집권자가 된다.
- ② 회원 또는 운영위원 1/3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시는 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13조 (회 비)

- ① 본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일정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.
- ② 회비의 사용은 회원의 전출, 퇴직시 기념패 및 기념품과 경조사등의 화환과 각종 회의비용 및 행사비용에 사용한다.
- ③ 사용목적외 부득이한 회비사용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.
- ④ 회비의 수납과 결산사항은 연 2회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⑤ 회비는 총무가 보통예금통장에 보관, 관리하되 수입 및 지출사유 발생시는 즉시 부회장, 회장에게 보고한다.

제14조 (기 타) 본회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부 칙

제1조 본회칙은 '9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